

24
2004년 3월 18일 ~~18~~일 ~~18~~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- ▶ 2004. 3. 16 배포
- ▶ 총 5 쪽 (사진없음)

보 도 자 료

- ▶ 근로기준과 민길수 서기관
TEL : 503-9742
E-MAIL : minkilsoo@hanmail.net
FAX : 503-9743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대부분 개정법에 따라 휴가개선

- '04년 2월말 현재 203개사 중 176개사

-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 대부분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: 법정근로시간 단축(1주 44시간→40시간), 월차휴가 폐지, 연차휴가 조정(15~25일, 2년당 1일 가산), 생리휴가 무급화, 업종별·규모별 단계적 시행('04.7~2011)

※ <법정시행시기> 1000인이상·금융보험업·공기업: '04.7.1, 300인 이상 '05.7.1, 100인 이상 '06.7.1, 50인 이상 '07.7.1, 20인 이상 '08.7.1, 20인 미만 2011년 기간내 대통령령으로 정함

- 금년 2월말 현재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해 「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」를 제출한 사업장이 203개사(15,579명)이며,

- 이 중 86.7%인 176개사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, 연차휴가를 조정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하였고

- 4.4%인 9개사는 현행 휴가의 일부를 축소하였으며,

- 8.9%인 18개사는 현행 연월차휴가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※ 별첨 : 적용특례 신고 및 휴가제도 개선 현황('04.2월말 기준)

○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 사업장 현황을 보면,

-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52.2%인 106개사(3,565명)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제조업이 17.2%인 35개사(3,208명), 사업서비스업이 10.3%인 21개사(1,083명) 순이며
- 기업규모별로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61.1%인 124개사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이 15.3%인 31개사,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이 12.3%인 25개사 순이고
- 노조유무별로는 노조없는 사업장이 92.1%인 187개사이고 노조있는 사업장이 7.9%인 16개사로 조사됐다.

○ 적용특례신고 사업장의 휴가제도 개선실태를 보면,

-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100%(17개사), 금융보험업의 84.0%(89개사), 제조업의 82.9%(29개사)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조정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개정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하였고,
- 규모별로는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100%(31개사), 20인 미만 사업장의 87.1%(108개사)가 개정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
- 노조유무별로는 노조없는 사업장의 89.8%(168개사), 노조있는 사업장의 50%(8개사)가 개정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정시행시기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. 특히 금융보험업이 많은 이유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등에서 은행·증권 등의 영향을 받아 법정시행시기('04.7월)전에 주5일제를 도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

※ '03.12월말 47개사 → '04.1월말 149개사 → '04.2월말 203개사

- 또한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고사업장의 대부분은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조정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등 개정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부담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.
-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 시행(3.10,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)을 계기로 실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※ 특례신고방법 :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(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)의 동의를 얻어 특례적용을 받고자 한 날의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특례신고를 하여야 함

※ 단축지원금 내용 :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법정시행시기보다 6개월전에 특례적용을 받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에 150만원씩을 지원

※ 우선지원대상기업 : 광업 300인 이하, 제조업 500인 이하, 건설업 300인 이하, 운수·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, 기타 산업 100인 이하

<별첨>

적용특례 신고 및 휴가제도 개선 현황('04.2월말)

1. 특례신고현황

가. 총괄

특례신고업체수	처리현황		
	수리	보완중	처리중
203	192	7	4

※ 특례신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과반수 동의 등을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된 7건은 제외

나. 특례신고의 업종별 분류

구분	사업체수		근로자수	
		백분율		백분율
계	203	100%	15,579	100%
금융보험업	106	52.2%	3,565	22.9%
제조업	35	17.2%	3,208	20.6%
사업서비스업	21	10.3%	1,083	7.0%
도소매업	17	8.4%	6,368	40.9%
기타	24	11.8%	1,355	8.7%

다. 특례신고의 규모별 분류

구분	사업체수		근로자수	
		백분율		백분율
계	203	100%	15,579	100%
1000인 이상	1	0.5%	5,576	35.8%
300인 이상 ~ 1000인 미만	8	3.9%	3,702	23.8%
100인 이상 ~ 300인 미만	14	6.9%	2,367	15.2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25	12.3%	1,832	11.8%
20인 이상 ~ 50인 미만	31	15.3%	955	6.1%
20인 미만	124	61.1%	1,147	7.4%

2. 특례신고 사업장 휴가개선 현황

가. 업종별 현황

구분	전체 사업체수	단협 등 휴가제도 변경 여부		
		개정법대로 시행 (월차폐지, 생리무급화 등)	종전 연·월차휴가 그대로유지	종전 휴가일수 일부축소 등
계	203	176	18	9
금융보험업	106	89	12	5
제조업	35	29	3	3
사업서비스업	21	19	2	-
도소매업	17	17	-	-
기타	24	22	1	1

나. 규모별 현황

구분	전체 사업체수	단협등의휴가제도변경여부		
		개정법대로 시행 (월차폐지, 생리무급화 등)	종전 연·월차휴가 그대로유지	종전 휴가일수 일부축소 등
계	203	176	18	9
1000인이상	1	1	-	-
300인이상 1000인미만	8	7	-	1
100인이상 300인미만	14	9	4	1
50인이상 100인미만	25	20	4	1
20인이상 50인미만	31	31	-	-
20인미만	124	108	10	6

다. 노조유무별 현황

구분	전체 사업체수	단협등의휴가제도변경여부		
		개정법대로 시행 (월차폐지, 생리무급화 등)	종전 연·월차휴가 그대로유지	종전 휴가일수 일부축소 등
계	203	176	18	9
노조있음	16	8	5	3
노조없음	187	168	13	6